

#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66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8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노인복지 관계법령의 제·개정 사항 반영
-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규정 신설 및 보완

## 주요내용

-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한 노인복지관 주요사업으로 개정(안 제3조제1항)
- 노인복지관 시설을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7에 따른 필수시설로 개정(안 제3조제2항)
-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및 재계약 절차이행규정 개정(안 제4조)
- 노인복지관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 규정 개정(안 제5조 및 제6조)
- 이용,사용허가 ,허가해지 및 사용이용료에 관한 규정 (안 제7조 및 제8조)
- 기구 및 인력관리 (안 제9조)
- 운영규정 제·개정 및 폐지시 시장 승인(안 제10조)
- 지도 및 감독(안 제11조)
-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 근거(안 제12조 및 제13조)

개정조례안 : 붙임 1

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 없음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 2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붙임 3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21. 6. 9. ~ 2021. 6. 29.(21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○ 현행조례 : 붙임 4

○ 방침결정문 : 붙임 5

< 붙임 1 >

##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노인복지법」 제37조에 따라 안산시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 및 위치)** 안산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 이라 한다)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상록구 노인복지관 : 안산시 상록구 고잔로 162
2. 단원구 노인복지관 :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34

**제3조(업무 및 시설)** ①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상담사업
2.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사업
3. 건강생활지원사업
4. 노년사회화교육사업
5.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업
6.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사업
7. 돌봄사업
8. 그 밖에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이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·운영한다.

1. 사무실
2. 식당 및 조리실
3. 상담실

4. 집회실 또는 강당
5. 프로그램실
6. 화장실
7.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
8. 비상재해대비시설
9.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**제4조(운영)**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한다. 다만,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기능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의 절차,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, 제21조의2 및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 운영관리를 위탁 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보조할 수 있다.

**제5조(수탁자의 의무)**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.
2.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.
3.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.
4.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,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위탁의 취소)**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관계법령,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
2.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
3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
4.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
**제7조(시설의 이용 등)**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한다.

②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

허가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해지할 수 있다.

1.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된 경우
2.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3.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
**제8조(사용료 및 이용료)** ①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(이하 “사용료”라 한다)를 납부하여야 하며,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(이하 “이용료”라 한다)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
2.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
2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및 가족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4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
5. 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
6.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.

1.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·사용하지 못한 경우와 사용·이용 개시전까지 취소한 경우 : 전액
2. 사용·이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: 이용·사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

**제9조(기구 및 인력)**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두되, 직원의 직급 및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10조(운영규정)**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

범위에서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1조(지도 및 감독)**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를 대상으로 복지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도하여야 하며, 시설운영 상황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연 1회 이상 검사하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노인복지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 관계 법령 및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**제13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노인복지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노인복지과장 김 영 식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노인정책팀장 두 현 지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오 세 청 (행정 2205)

[별표]

##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료

### 1. 시설 사용료

시설명	단 위	사용료	비 고
대강당	오전	40,000원 08시~13시	○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○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단위요금의 50퍼센트 가산 (초과 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허용한다.)
	오후	50,000원 13시~18시	
	야간	60,000원 18시~22시	
	1 일	100,000원	

### 2. 부속설비 사용료

구 분	기 준	금 액	비 고
음향기기	1회 (2시간)	20,000원	○ 1시간 초과시마다 기준금액의 20퍼센트가산

### 3. 냉·난방 사용료

구 분	기 준	금 액	비 고
대강당	1회 (2시간)	50,000원	○ 1시간 초과시마다 기준금액의 20퍼센트 가산

#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8-668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8월 31일

제안자 : 문화복지위원장

## 수정이유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독립유공자 및 가족이 포함되어 내용이 중복되고,
- 조례에서 준용은 같은 효력이 있는 다른 조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은 준용이 아니라 적용의 대상임.

## 주요골자

- “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및 가족” 삭제 (안 제8조제3항제2호)
- 관계 법령 삭제 (안 제12조)

##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.

안 제12조 중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노인복지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 관계 법령”을 “「안산시 공유재산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8조(사용료 및 이용료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<u>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</u>」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및 가족</p> <p>3. ~ 6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<u>사회복지사업법</u>」, 「<u>노인복지법</u>」, 「<u>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</u>」 등 관계 법령 및 「<u>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</u>」를 따른다.</p>	<p>제8조(사용료 및 이용료) ①·② (원안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</p> <p>1. (원안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2. ~ 5. (원안의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④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12조(준용) ----- ----- 「<u>안산시 공유재산 및 관리 조례</u>」 ----- ----- ----- ---</p>